

# 南國 신라 국왕의 祭禮 儀典 禮服考

임 명 미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A Study on the Ceremonial Costum's of the South (Unification)Silla Kingdom-Dynasty

Myung-Mi Im

Dongduk Women's Univ. Prof

### ABSTRACT

The results from the consideration of this are as follows.

1. Silla Kingdom has been the name of chronological era, from king Buhung 2nd years to Jinduck 4 years.
2. From Dang dynasty has been received to King of Silla, first class-third class of Dang's office and rank.
3. After unification of Silla Kingdom, Dang dynasty's envoy and missionary and many commercial men and artist come frome Dang to Silla, therefore, influenced their costume habits and behabiers from royal families costumes and common peaples costume, without concern of that one's social position.
4. Ancient Silla Kingdom performed a religious service an emperor's ceremony, but after unification, performed King's level a religious service, therefor King's ceremonial costumes are Dang dynasty's king's level Myunryukwanbok (冕旒冠服).

Key Words : Silla Kingdom, Frst-Third class of Dang's official ranks(正 1-3品, 官爵),  
King's ceremonial costumes. Myunryukwanbok (冕旒冠服).

### I. 서 론

新羅의 國號는 중국 魏代에는 '新盧', 斯盧(사로)<sup>1)</sup>->南朝의 宋代에는 斯羅(사라)<sup>2)</sup>->新羅 순으로 변천한 것으로 보고있으며,<sup>3)</sup> 중국식 '왕'의 존호사

용은 지증왕 4년 부터이며<sup>4)</sup>, 최종국호로 정착된 '新羅'는 지증왕대 부터이다. 본 연구에서 '古新羅'라는 國名은 지증왕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分權대립 시대 었을 때 國名으로 정의 하며, '南國(統一)新羅'는 고구려, 백제 패망후 고신라가 고구

려(대동강 이남의 영역), 백제의 故地를 병합한후,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의 故地에서 일어난 발해(北國)와 共存 하다가, 고려왕조에 의해서 병합된 936년까지 약 270년간으로 정의 한다.<sup>5)</sup>

중국의 삼국시대에 城邑國家였던 古新羅는, 晉의 太元 2년(377), 내물왕대 처음으로 고구려 사신을 따라서 중국측과 교류를 시작으로(자치통감 晉 烈宗紀), 위,진,남.북조대에는 중국측 南朝의 梁과 백제사신을 따라 교류 하였다. 6세기초, 법흥왕대에 국가의 통치기반을 확립하였고, 3국은 인접국경에서 사소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고구려와 백제 양국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침공으로, 국가 존재가 위태로운 상황속에서 古新羅는 신흥국인 唐의 지원이 필요하였고, 唐의 지원을 받아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으나, 당은 백제의 故地에 5개의 도독부를 설치하고, 龍朔 원년(唐 高宗 年호 : 661-663)에는 古新羅를 계림주 대도독부로 삼아 문무왕에게 都督職을 除授하였다.

그러나 고신라가 고구려의 故地인 대동강 이남지역을 통합하자, 唐은 669년, 평양지역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 이로 인해 당과 고신라의 대립이 격화 되었다. 673년 唐이 말갈, 글안 병사를 이끌고 침입, 다시 고신라까지 멸망 시키려하자, 문무왕은 唐 고종에게, “..신라는 이미 중국의 한개 州(계림주) 이니 ...두 나라로 나누는것은 합당치 않으며... 한나라로 만들어서, 길이길이 뒷 근심이 없도록...”이라 하여<sup>5)</sup>, 唐의 일부가 되기를 바랄 정도로 까지 처한 위기상황에서, 唐의 高宗은 문무왕의 왕위를 폐위시키고, 관직을 박탈, 王弟(김인문)를 국왕에 봉하였다. 그러나, 문무왕의 사죄로 다시 관직과 왕위를 회복하였으며, 왕은 내적으로 고구려, 백제의 유민을 수용, 흡수 통합해 나가는 융화정책을 펴면서, 국력을 키워, 결국은 676년 당을 대동강 이남에서 완전히 축출하였다.

당 세력의 대동강 이남에서의 추출은, 唐의 안동 도호부를 요동의 고성으로, 백제 故地의 웅진 도독부를 건안의 고성으로 철수하게 만들었고,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의 고지와 백제의 고지를 완전 병합, 古新羅는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였다. 680년 문무왕

이 서거하고 신문왕이 등극하면서, 唐側에서는 황제(高宗)死去, 睿宗과 測天武后의 등장, 계속되는 內分과 정치적 혼란으로, 지배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고구려의 故地에서는 신흥국(발해)의 대두를 불러 일으켰고, 이와 같은 국제 질서 속에서, 남국(통일)신라는 정치적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唐을 통한 중국 문화와 개방된 서역통로를 통한 서역의 문화를 받아 드리면서 문화를 성숙시켜 나갔다. 이러한 역사발전의 과정을 거친, 南國新羅가 통일후, 왕의 儀禮, 祭祀 예복으로 중국측 유교례적 율령을 받아드려, 冕旒冠 章服制를 착용하였을 것이라는 論證을 제시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 1. 연구목적.

몇 千年前의 복식, 미비한 출토유물이나, 문헌 자료 등으로 유추하여 再現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련사례의 인간행동들을 분석하여 보면 지극히 미미할지라도 어떤 실마리를 찾게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남국(통일)신라대 國王禮服의 재현을 위해, 중국과의 관련 자료속에서, 특히 국왕의 책봉을 통한 賜典官爵, 宗묘, 사직의 제사례의 格과 對象, 조공 및 책봉사신의 내왕 사항 등의 고찰을 통해서, 남국신라가 중국의 儒教禮를 統治 秩序 次元에서 받아 드린후 祭祀 및 기타의 儀典禮에서 어떤 衣冠制를 착용 하였을 것인가를 유추하여 내고, 유추한 자료를 뒷받침 해줄수 있는 論證資料를 제시하여, 당시 시대복식의 재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제 23대 법흥왕(514-540 : 재위 27년)대, 梁의 보통 2년(521), 고신라의 사신은 백제 사신을 따라서 처음으로 梁에 들어갔고, 법흥왕 7년에는 율령을 반포하여 公服色을 제정하였다. 23년(534)에는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여, 대등한 格으로 주변국들과 외교관계를 갖었다. 즉, 법흥왕이후 진덕여왕 4년(650), 당의 고종, 영희 1년에 唐의 年號를 채택하여 사용하기 까지, 116년간 고신라는 독자적 年

號를 사용하였다. 이를 고찰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天子國과 대등한 고신라 固有의 禮服制를 착용하였을 것이라는 논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唐의 태조가 진평왕 46년에 官爵을 賜與한것을 시작으로, 현강왕 4년(당 회종 : 878)까지 300여년 동안 왕이 바뀔 때마다 官爵을 주고 册封하는데, 이들 官爵은 唐의 正 1品에서 正 2品の 官爵이다. 사여관작의 品格 糾明은 왕 祭祀 禮服의 格을 결정해 주는 단서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3) 禮記 王制편에 보면, 祭祀의 對象이 天子와 諸侯의 格에 따라 달랐으며, 규정이 있었다. 고신라와 남국신라의 祭祀 대상과 格의 이해를 통해서 고신라와 남국新羅의 國家體制와 王의 祭祀禮服의 格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思料되어, 고신라와 남국신라의 祭祀對象과 格을 파악해 보고자한다.

(4) 唐書 車服志 고찰을 통해서, 唐이 占新羅 및 南國新羅 王에게 賜與 한, 正1-2品 官職者의 祭祀禮服의 형태 및 構成 內容의 파악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照明 해보고자 한다.

(5)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國內外 史書, 연구문헌 자료, 관련 儀禮書의 繪圖 등을 분석, 고찰한다.

## II. 신라의 역사적 배경.

### 1. 법흥왕 23년부터, 진덕여왕 4년전까지, 고신라는 독자적 年號를 사용하였다.

제 23대 법흥왕(514-540 : 재위 27년)8년, 梁의 普通 2년(521), 고신라의 사신은 백제 사신을 따라서 처음으로 梁에 들어갔고, 법흥왕 7년, 율령을 반포하여<sup>7)</sup> 公服色을 제정하게 하였다. 23년(534)에는 처음으로 年號를 사용하여, 天子國과 對等한 格<sup>8)</sup>으로 주변국들과 외교관계를 갖었으며, 법흥왕이후 진덕여왕 4년(650 : 당의 고종, 永徽 1년)에 唐의

年號를 채택하여 사용하기까지, 116년간 고신라는 독자적 年號를 사용하였다.

진덕여왕 원년(647) 唐으로 부터 '柱國, 낙랑군왕'의 관작을 받는다. 그러나 관작의 사여는 중국의 관례 행위였고, 여왕은 원년 年號를 '太和'로 제정하여 독자적인 年號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당의 태종은 사신에게 '신라는 신하로서 大國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따로 '年號'를 사용하고 있는냐'고 묻기 까지 하였었다. <표 1>은 고신라 국왕 年號 사용 표이다.

<표 1> 고신라 국왕 年號 사용 표(典據 : 삼국사기, 신구당서)

명	년 도	내 용
법흥왕	23년(536)	年號를 '建元'원년 으로함.
진흥왕	12년(551)	年號를 '開國'으로 함.
	29년(568)	年號를 '泰昌'으로 바꿈
	33년(572)	年號를 '弘濟'로 바꿈.
진평왕	6년(584)	年號를 '建福'으로함.
선덕왕	3년(632)	年號를 '仁平'으로함.
진덕왕	즉위 익년 4년(650)	'太和' 年號로 개원함 중국 年號를 사용하기 시작함.

### 2. 국왕에게 賜與된 官爵의 品級.

고신라는 唐의 고조로 부터 진평왕 46년(624)에 "주국<sup>9)</sup>, 낙랑군공<sup>10)</sup>, 신라왕"의 책봉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당 회종 4년(878), 남국신라 현강왕 3년까지 254년 동안, 신라의 新王이 등극하고 1~6년 사이에 당나라는 사신을 보내 관작을 수여하고 책봉하였다.(표 2, 3 참조)

삼국통일 이전까지는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의 관작을 사여 받았고, 진덕왕 원년부터 "개부<sup>11)</sup>", 삼국통일후 태종 무열왕 원년이후 부터는 "개부 의동삼사<sup>12)</sup>, 신라왕", 문무왕대 唐이 고신라 지역을 '계림주 대도독부'로 명명하고, 중국의 일개 州로 삼은 뒤, 문무왕 4년, "계림주 대도독"<sup>13)</sup>의 관작을 사여 하였다.

측천 무후는 신문왕, 성덕왕 1년, 2회 국왕을 책봉하고, 신문왕 원년, 고종 開耀 1년(681), 개부 의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으로, 효소왕 원년,

측천 천수 3년(692)에는 보국대장군<sup>14)</sup>, 행좌표도위 대장군<sup>15)</sup>, 계림주 도독으로, 성덕왕 6년, 당 중종 景龍 1년(707)에는 표기대장군<sup>16)</sup>을, 동왕 12년(710) 10월, 현종이 표기대장군, 특진, 행좌 위위 대장군,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계림주 자사, 상주국, 낙랑군공, 신라왕. 동왕 32년에는 태사, 태보<sup>17)</sup>, 효성왕 2년(738), 당 현종 開元 6년, 당은 국왕을 개부 의동삼사, 사지절<sup>18)</sup>,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sup>19)</sup> 겸 지절 영해군사, 신라왕의 관작을 수여하였다.

현종은 개원 1년(713), 25년(737), 28년(740), 天寶 2년(743), 4회에 걸쳐서 신라 왕과 왕비, 大妃를 책봉하고 1회 加爵(733) 하였다. 혜공왕 5년, 대종 大曆 7년(772)에는 왕을 검교 대부상서<sup>20)</sup>로, 국왕과 왕비를 책봉하였다. 선덕왕 6년, 당 덕종 貞元 원년

(785)에는 검교 태위<sup>21)</sup>, 계림주 자사, 영해군사, 신라 왕으로, 애장왕대 국왕과 왕비를 동왕 6년, 당 순종 永貞 1년(805)에는 개부 의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충지절 영해군사, 신라왕의 관작을 수여하고, 흥덕왕대 왕과 왕비, 대비를 책봉하고, 헌종대 왕과 왕비, 문종대 문성왕과 왕비, 자종대 경문왕과 왕비, 왕태자를 책봉하고 왕과 왕비, 왕태자에게 의복을, 희종대 헌강왕을, 이후 헌강왕 3년까지 같았다. 이상에서 보면 당은 신라 국왕에게 정 1품-정 3품까지의 관작을 수여하였다. <표 2. 3>

신라는 唐의 高祖로 부터 진평왕 46년(624) 官爵 賜與와 冊封을 시작으로, 헌강왕 4년(878 : 당 희종 5년)까지 300여년 동안, 왕이 바뀔 때 마다 당의 正 1品-3品の 관작을 주고 책봉한다.

<표 2> 대 중국 고신라 국왕 책봉 표. (典據 : 삼국사기, 신. 구당서)

왕 명	연 도	내 용
진지왕	26년(565)	북제 무성황제 사지절, 동리교위,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책봉
진평왕	16년(594) 46년(624) 54년	수나라 건국, 황제가 국왕을 上 開府, 낙랑군공, 신라왕, 책봉. 당 高祖, 국왕을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에 책봉. 국왕이 죽자, 태종이 '광록대부'를 추증하고, 贈儀로 재단, 200단을 보냄.
선덕왕	4년(635)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에 책봉.
진덕왕	원년(647)	국왕이 죽자, 태종이 '광록대부'를 추증, 당이 국왕을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에 책봉.

<표 3> 대 중국 남국신라 국왕 책봉표. (전거 : 三國史記, 新. 舊唐書)

왕 명	연 도	내 용
무열왕	원년(654)	개부의 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함.
문무왕	2년(662) 3년(663)	개부의 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으로 책봉함. '계림주 대도독부'로 삼고, 국왕에게 '계림주 대도독'의 관작을 줌
신문왕	원년(681) 11년(692)	개부의 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 보국대장군, 행좌표도위대장군, 계림주 도독.
효소왕	원년(692)	보국대장군, 행좌표도위대장군, 계림주 도독.
성덕왕	원년(702) 6년(707) 12년(713) 32년(733)	개부의 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 표기대장군 표기대장군, 특진, 행좌 위위 대장군,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 상주국, 낙랑군공, 신라왕. 계림주자사, 개부 의동삼사, 영태군사.
효성왕	2년(738) " " 4년(740)	성덕왕 사후 추증, 태자 태보. 개부의 동삼사,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겸 지절 영해군사, 신라왕. 왕비 책봉. 부인 김씨 책봉.
경덕왕	2년(743)	개부의 동삼사,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겸 충지절 영해군사, 신라왕.

혜공왕	4년(768) " 6년(770)	개부의동삼사,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겸 지절 영해군사, 신라왕. 어머니 대비 책봉. 검교 태위, 도독 계림주 자사, 영해군사, 신라왕.
선덕왕	6년(785)	검교 태위, 도독 계림주 자사, 영해군사, 신라왕.
원성왕	2년(786)	검교 태위, 도독 계림주 자사, 영해군사, 신라왕.
소성왕	원년(799)	책봉사가 왔으나 국왕이 사거 하므로 되돌아 감.
애장왕	원년(800)	선왕을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신라왕으로 추증함.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겸, 지절총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함.
애장왕	6년(805)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겸, 지절총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함.
현덕왕	원년(809)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겸, 지절총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함. 왕비 책봉.
정 왕	4년(812)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겸, 지절총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함.
홍덕왕	2년(827)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겸, 지절총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함. 왕비, 대비 책봉.
회강왕, 민애왕, 신무왕		
문성왕	3년(842)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겸, 지절총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함. 왕비 책봉.
현안왕		
경문왕	5년(865)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겸, 지절총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함. 왕비, 왕태자, 대제상, 차재상 책봉.
현강왕	4년(878)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겸, 지절총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함.
진성여왕	4년(891)	선왕을 태사, 태부로 추증함.

3. 新羅·唐 양국 册封使와 朝貢使 來往.

신라는 내물왕대 처음으로 고구려 사신을 따라서 중국의 뜰과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후, 신라의 법흥

왕(梁의 武帝대, 고구려 광개토왕, 장수왕의 뒤를 이은 문자왕대) 7년, 梁에 사신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이후,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하였고, 신라가 唐에 보낸 사신의 내왕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4> 남국 신라와 對 唐 사신 교류 국왕 재위별 회수 일람표 (268년간).(典據 : 삼국사기. 신.구당서)

국왕명	국왕 在位年	唐	사실판건 횟수
진평 45년이후	在位 54	고조	7회
선덕	16	태종	10
진덕	8	태종-고종	7
무열	8	고종	6
문무	21	고종	14
성덕	35	중종, 예종, 현종	44

효성	5	현종	3
경덕	23	현종	16
혜공	16	대종	12
선덕	5	덕종	2
원성	14	덕종	3
소성	1	덕종	1
애장	9	덕종, 순종, 혜종	5
현덕	18	현종, 목종, 경종	10
홍덕	10	문종	9
신무	1	문종	1
문성	18	무종, 선종	4
현안	4	선종	1
경문	14	의종	5
현강	11	희종	5

이상과 같이 고신라와 남국신라가 보내는 조공사신이나, 唐의 册命使, 사신 내왕을 통한 官爵이나 詔勅 수령시 신라는 唐의 儒敎禮的<sup>22)</sup> 儀典禮의 法 度를 따랐을 것이며, 그에 따라 양국의 전례복식 문화는 동질성을 띄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 古 新羅 代 中 國 사신 내왕표. (典據 : 三國史記)

왕 명	년 도	내 용
법 흥	7년(520), 8년	양에 사신보냄
진 흥	10년(559)	양에서 불사리 보내음.
	25년(564)	북제에 사신 보냄.
	26년(565)	북제 무성황제 사지절, 동리교위,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책봉
	29년(568)	년호를 '태창'으로 바꿈. 남조 陳에 사신보냄
	31년(600)	"
	33년(602)	년호를 '홍제'로 바꿈. 북조 齊에 사신보냄. 八關 宴會를 7일간 바침
37년(606)	호승이 부처 사리를 가져옴. 왕이 머리깎고 승복을 입음.	
진 지	3년(578)	진에 사신 보냄.
진평왕	16년(594)	수나라 건국, 황제가 국왕을 上 開府, 낙랑군공, 신라왕, 책봉.
	18년(596), 24년(602), 26년(604)	수에 사신보냄.
	33년(611)	" 표를 올리고 군사를 요청함.
	35년(613)	수의 사신 왕세의가 황룡사에 이르자 백고좌회를 열었다.
	43년(621), 45년(623)	당에 사신을 보냄.
	46년(624)	당 高祖, 국왕을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에 책봉.
47년(625), 48년(626), 49년(627), 6월, 11월, 51년(629)	당에 사신보냄.	
53년(631)	"미녀 2인 보냈으나 되돌려옴	
54년	국왕이 죽자, 태종이 '광록대부'를 추증하고, 부의로 채단 200단을 보냄.	
선덕여왕	4년(635)	당이 국왕을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에 책봉.
	9년(640)	왕이 자제를 당의 국학에 입학시켜주기를 청함.
	10년(642), 12년(643), 1월, 9월, 13년(644), 14년(645)	당에 사신보냄.

진덕여왕	원년(647)	국왕이 죽자, 태종이 '광록대부'를 추증. 당이 국왕을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에 책봉. '太和' 년호로 개원. 당에 사신을 보냄. 태종이 신하로서 대국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따로 연호를 쓰고, 칭하는가 하고 트집을 잡자 신라는 법흥왕이라 사용하여 온것이라고 답함. 태종이 '旃書'를 보냄. 중국의 의관제도를 채용함. 사신을 당에 보내 '백제'를 친 것을 알림.
	즉위 익년	
	2년(648), 1월. 11월	
	3년(649) 6월	

<표 6 > 남국신라 대당 사신 내왕표. (典據:三國史記. 新. 舊 唐書)

왕 명	년 도	내 용
진덕여왕	5년(651)	왕이 처음으로 중국식으로 정초에 백관의 새해인사를 받음. 당이 자색포, 대, 채색단 100필, 생초 200필을 보내음.
	6년(652), 7년(653)	사신보내 금총포를 보냄.
태종무열왕	원년(654) 4월	당의 율령을 살펴서 60여조를 가다듬어서 정하게함. 당이 국왕을 개부의 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함. 당에 사신보냄.
	2년(655)	당에 사신보내 구원요청
	3년(656)	문왕을 당에보내 조공
	6년(659)	사신을 당에 보내 군사요청
문무왕	2년(662)	당이 국왕을 개부의 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함. 당에 차남을 보냄.
	3년(663)	당이 우리나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국왕을 '계림주 대도독'의 관작을 줌.
	4년(664)	부인들도 중국의복을 입도록함.
	6년(669)	사신을 당에 보내 군사요청
	14년(674) 15년(675)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함. 당에 사신보내 사죄하고 황제는 용서하고 왕의 관작을 회복시켜줌.
원성왕	8년(792)	당에 사신보내 미녀를 바침.
소성왕	1년(799)	당에 사신보냄.
애강왕	원년(800)	당이 원성왕을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신라왕으로 추증함. 당이 왕을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 자사겸, 지절총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함.
	7년(804), 9년(808), 10년(805)	당에 사신을 보냄.
현덕왕	원년(809), 2년(810), 7년(815)	당에 사신을 보냄.
	11년(819)	당에 군사를 보내 도와줌
	17년(825)	당에 사신을 보냄.
흥덕왕	3년(828), 5년(830), 6년(831), 11년(836)	당에 사신을 보냄.
	회강왕, 민애왕	
신무왕	원년(839)	당에 사신을 보냄.
문성왕, 헌안왕		
경문왕	2년(862), 9년(869), 10년(870)	당에 사신을 보냄.
헌강왕	2년(876)	당에 사신을 보냄.

### Ⅲ. 신라의 祭祀對象과 祭祀의 성격

신라의 제사례에서 국왕이 어떤 의례복을 착용하였을 것인지 유추 하여보기 위하여, 제사의 대상과 제사의 성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禮記에 보면, '천자는 天地와 천하의 명산 大川에 제사지내고 諸侯는 社稷과 그의 땅에 있는 명산대천에 제사 지낸다'고 되어 있다. 후한대, 정현의 註에서 보면, '大祀'에서는 천지와 宗廟를 대사의 대상으로 제사하였고, '中祀'에는 일월성신, 오악을 제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소사에는 司命이하 山川 百物을 제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제사의 대상을 구분 짓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제물과 의례절차를 差等 있게 행하였던 제도는 隋, 唐에 이어졌고, 신라는 이를 수용하여 영토내의 산천을 대, 중, 소사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제사를 실시하였다. 즉, 신라는 시조묘의 종묘와 3 山<sup>23)</sup>, 5 岳<sup>24)</sup> 이하 명산대천을 大祀, 中祀, 小祀로 나누어서 제사의 대상으로 삼아 제사하였다. 신라의 祭祀禮가 儒敎禮<sup>25)</sup>로 '周禮'와 '禮記'에 根據하였으며, 태종(무열왕)이나 문무왕의 統治理念속에 儒敎禮가 강력하게 內在 하였으리라고 볼수 있는 하나의 端的인 例로는 '...22년, 진덕여왕이 ... 김춘추 및 그의 아들 文王을 唐에 보내 朝覲케하니...춘추가 國學에 나아가 釋尊(공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禮)과 講論儀式을 보고....'라 되어 있다. 즉, 김춘추는 이찬시대에 遣唐使로 唐에 들어가서, 당의 初期, 武德 7년령, 태종의 貞觀政要와 律令格式, 盛唐의 문물제도를 직접 見聞 하였고, 정관 10년(태종 정관 10년, 율령 격식 공포), 태종 어찬의 '짚書' 등을 받아들였다. 또 '.....'법민(문무왕)이 죽고, 그의 아들 신문왕이 왕위를 세습후 唐의 禮制를 要求 하므로, 武后가 '吉,凶要禮'와 함께....'라 되어 있다. (新,舊唐書, 東夷傳, 新羅條).

#### 1. 대 사

唐대 대사의 대상은 昊天上帝, 五方帝, 皇地社, 神州의 天地와 宗廟를 대사의 대상으로 제사하였다. 신라의 경우, 고신라 시대나 남국신라시대 초기까지는 天子國의 格에 해당하는 天地神과 宗廟에

대한 개념의 祭祀禮를 행하였다. 中期이후, 大祀의 上位에 신궁, 오묘, 사직단, 八籍, 先農 등의 農業關係神에 대한 제사가 따로 있었고, 대상으로 3산을 대상으로만 하여 제사 지낸 것으로 보고있다.

#### 2. 중 사

唐대 중사의 대상은, 일, 월, 성신, 사직, 先代帝王, 오악, 사진, 사해, 사독, 帝社, 선농, 석존 등을 제사의 대상으로 하였다<sup>26)</sup>. 즉, 唐에서는 나라의 '鎮'으로 숭상하던 5방위의 명산을 중사의 대상으로 제사하였고, 남국신라에서는 통일 직후 唐의 중사체도를 받아들여 남국신라의 형편에 맞게 중사의 대상은 五嶽, 四鎮<sup>27)</sup>, 四海<sup>28)</sup>, 四瀆<sup>29)</sup>, 속리악<sup>30)</sup>, 추심 등으로 신라의 동서남북 四邊을 원칙으로 하였다<sup>31)</sup>.

#### 3. 소 사

중국에서는 당대, 소사의 대상으로 司中, 司命, 風伯, 雨師, 諸星 등 山川 百物을 제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남국신라는 소사의 대상으로 霜岳이하 남국신라 영토내의 24-25개의 산천을 포함시켰었다.<sup>32)</sup>

신라의 제사령을 보면,

1. 1년에 6회 오묘에 제사하는데, 1월 2일, 5일, 5월 5일, 7월 상순, 8월 1일, 15일, 12월 寅日.

2. 신성 북문 제 8자, 풍년은 대뢰, 흉년은 소뢰를 사용하였다.

3. 입춘후 亥일, 명활성남 응살곡제 선농, 입하후 亥일, 신성북문 제 중농, 입추후 亥日은 諸侯農.

4. 입추후 축일, 견수곡문, 제풍백, 입하후 신일 탁도 제우제, 입추후 진일본 피유촌 제영성에 제사하였다.

이상의 <표 7. 8>에서 보면, 고 신라에서는 2대 남해왕 3년, 시조 혁거세의 묘를 설치하였고, 主祭者는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혹은 비상시에 始祖墓에 드리는 제사를 恒例로 주관하였다. 왕은 즉위의례나 천제지변 등의 중요한 경우에만 始祖廟에 親祀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33)</sup>.



<표 7> 고신라 국왕 중요 사직 제사 실시 표(1) (典據:三國史記)

왕명	년도	제사 내용
유리왕	2년(25), 파사왕 12년(81), 지마왕 2년(113), 일성왕 2년(135)	시조묘 친사
파사왕	30년(109)	산천에 제사
아달라왕	2년(155) 17년(170)	시조묘 친사 시조묘 수리
벌휴왕	2년(185), 나해왕 2년(197)	시조묘 친사
조분왕	원년(230), 첨해왕 2년(247)	" 배알
첨해왕	17년?(247)	시조묘와 명산에 제사
미추왕	2년 (263)	국조묘 친사
유례왕	2년(285)	시조묘 배알
기림왕	2년(299) 3년(300)	" 제사 태백산에 망제
홀해왕	2년(311), 내물왕 3년(358)	시조묘 제사
실성왕	3년(404), 눌지왕 2년(418)	시조묘 배알
눌지왕	19년(435)	역대 왕릉 수리
자비왕	2년(459)	시조묘 배알
소지왕	2년(480) 7년(485) 9년(487)	" 제사 守墓지기 20가구 추가 설치 최초로 神宮 설치
소지왕	17년 (495)	신궁에 친사
지증왕	3년 (502)	" , 殉葬 禁
법흥왕	3년(516)	신궁 친사
진흥왕		天地神에 제사, 37년 왕이 儉이 됨
진지왕	2년(577), 진평왕 2년(580), 선덕왕 2년(633)	신궁에 친사

<표 8> 남국신라 국왕 중요 사직 제사 실시표 (2) (典據:三國史記)

왕 명	연 도	내 용
진덕여왕	익년 11월	'太和' 년호로 개원 신궁에 친사, 천지의 신에게 제사함
무열왕		
문무왕	8년(668)	선조사당에 배알.
신문왕	2년(682) 7년(689)	신궁에 친사 대신을 조묘에 보내 5묘에 제사
효소왕	3년(694), 성덕왕 2년(713)	신궁에 친사
효성왕	3년(739)	조고묘 참배
경덕왕	3년(744), 해공왕 2년(766)	신궁에 친사
해공왕	12년(776)	오묘조성 하고 제사.
선덕왕	2년(781) 4년(783)	신궁에 친사 사직단을 설치하고 오묘를 조성하고 제사함.
원성왕	원년(785) 3년(787)	오묘설치 신궁에 친사

소성왕		
애장왕	2년(801) 3년(802)	시조묘 배알.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사당을 따로 모심 시조, 국왕의 고조부, 증조부(원성), 조부, 부(소성대왕)으로 구성된 5묘를 조성함. 신궁에 친사함.
헌덕왕	2년(810), 흥덕왕 2년(827)	신궁에 친사
회강왕, 민애왕, 신무왕, 효성왕.		
현안왕	2년(858)	신궁에 친사
경문왕	4년(864)	바다에 망제
현강왕, 정강왕, 진성왕, 신덕왕, 경명왕,		
경애왕	원년(924)	신궁에 친사
경순왕		

고 신라에서는 불교에 귀의하여 종래에는 儺이 된 진흥왕을 제하고는 3대 유리왕 이후부터 소지왕 대까지 역대 왕들은 즉위 2~3년내에 시조묘에 親祀하거나 배알하였다. 22대 지증왕 이후 부터는 親祀의 대상이 神宮으로 바뀌었고, 남국 신라대에는 전쟁중의 무열왕, 문무왕(문무왕은 전쟁에서 승리한후, 백관을 거느리고 참배함), 재위 1~2년만에 죽은 소성왕, 회강왕, 민애왕, 신무왕, 정강왕 등을 제외하고, 진덕왕 이후 경애왕까지 역대 제왕들이 卽位儀禮나 天地변등의 국가 大事시 종묘, 사직에 친사하였다. 40대 애장왕, 41대 헌덕왕, 42대 흥덕왕 대에는 시조묘와 신궁<sup>34)</sup>, 兩墓에 친사하였다.

고 신라의 祭祀儀式 및 典禮는, 남국신라의 초기

까지에는 天子格에 해당하는 天地神과 宗廟에 대한 개념으로 제사례를 행하였다. 즉, 제22대 지증왕대, 유교례적으로 名山大川과 진, 해, 독의 諸神들에게 대,중,소사의 등급을 부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고, 神宮은 제 21대 소지왕 9년(487), 봄 2월에 설치 되었었지만, 지증왕 3년에 神宮에 국왕이 親祀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sup>35)</sup> 25대 진흥왕의 순수비에 보면, “地祗”, 즉 천자의 제사대상에 해당하는 “地神”을 제사지내<sup>36)</sup>, “天地에 제사”한 것으로 고찰되어<sup>37)</sup>, 천자격의 禮에 준한 제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으며<sup>38)</sup>, 통일이후, 통일에 의한 영토 확장과 더불어, 唐의 년호, 唐의 율령제 사용 등의 영향으로, 신문왕대 禮記의 王制편에 있는, “天子는 7墓,<sup>39)</sup> 諸侯는 5墓制”<sup>40)</sup>의 제후

<표 9> 남국 신라 국왕별 五廟 造成표. (典據 : 三國史記)

王 名	五廟  구성 내용	
	不遷主	2昭 2穆 내용
신문왕 7년(687)	태조	진지, 문흥(용춘의 추봉 왕명), 태종, 문무,
혜공왕 12년(776)	"	미추, 태종, 문무, 조부, 考
선덕왕	"	태종, 문무, 성덕, 개성(선덕왕의 考 추봉명)
원성왕 원년(785)	"	태종, 문무, 흥평(원성왕의 조부, 문의 추봉 왕명), 명덕(원성왕의 考, 고양의 추봉 왕명).
애장왕 2년(801)	"	명덕(애장왕의 고조), 원성(애장왕의 증조), 조 혜충대왕(혜충 태자 인겸의 추봉왕명), 소성(고).

의 禮에 입각한, 五廟制<sup>41)</sup>를 채용, 고신라대 신라 大, 中, 小祀의 대상을 개편하는 典禮의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sup>42)</sup> 그러나 종묘제는 신문왕 이전에 이미 기존의 시조묘나 신궁과는 다른 형태의 宗廟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으며<sup>43)</sup>, 실제로 문무왕은 5년(665), “백제와 熊嶺에서 단을 쌓고 맹약을 한 뒤, 金泥를 입힌 증표를 ‘宗廟’에 간직하였다”고 하였으니...<sup>44)</sup>, 신문왕 이전의 宗廟존재가 확인된 셈이다.

또한, ‘五廟制를 채택’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라가 唐에 대하여, 諸侯格으로 국가체제나 제사례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연구에 의하면, 선덕왕 이전까지는 天子格의 祭祀禮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으니<sup>45)</sup>, 선덕왕대에 와서 ‘제후의 禮에 상응하는 제사의식과 전례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46)</sup> 그 이유는 선덕왕이 先王인 해공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下代의 첫왕으로서, 그의 부도덕한 즉위가 대외 관계에서 약세를 초래하게 되므로서, 對唐 관계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제후의 禮로 格을 낮추고, 禮記 王制편에 있는 “天子祭 天地, 諸侯祭 社稷” 개념의 예법을 수용, 선덕왕 4년, 社稷壇<sup>47)</sup>을 설치하였고, 그에 맞추어 기타 天子格의 제사를 수정하여 제후격의 제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즉, 天地의 神에게는 天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제후이하는 그에 대한 제사를 거행할 수 없도록 된 규정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sup>48)</sup> 선덕왕이후 五廟制, 社稷壇 설치, 先農 등의 제후격 제사례에 의하여 제사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sup>49)</sup>.

#### IV. 국왕, 祭祀 및 기타 儀典禮 衣·冠制

고 신라의 제사의식 및 전례는, 제 22대 지증왕대, 儒敎禮의으로 名山大川과 진, 해, 독의 諸神들에게 大, 中, 小祀의 등급을 부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고, 소지왕 9년에 설치를 본 神宮에 국왕이 親祀하는 제도가 지증왕대 정착되었다.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존호를 ‘마립간’에서 “王” 바

꾸고, 喪服法을 제정하고 순장을 금지하였다. 이때 국왕은 유교례를 받아 드렸으므로 天子格 國家시절의 祭祀禮服에 착용하였던, ‘金冠’과 그에 따른 祭祀服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sup>50)</sup>

신라는 법흥왕(514-540 : 재위 27년, 梁의 보통 2년(521))대, 백제 사신을 따라서 처음으로 梁에 사신을 보냈고, 이후 왕은, 年號를 제정하고, 중국 晉나라의 泰始法을 母法으로 하여 고구려가 받아들여서 제정한 律令<sup>51)</sup>을 답습하여, 신라의 율령을 制定 반복하면서 백관의 袴褶服制 公服色을 制定하였다. 그러니까, 진덕여왕대 신라가 받아들린, 唐의 武德令 외에, 이미 신라에는 100餘年前에 고구려, 백제 律令의 母法이 된, ‘晉書’에 보이는, 제반 儀禮(周禮, 禮記 등 儒敎禮)에 입각하여 제정된 律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唐 태종이 새로 편찬한 ‘晉書’를 보내 주었으니<sup>52)</sup>, 진덕여왕 당시 新羅朝廷의 晉나라 儀禮律令에 대한 認識의 정도가 어떠하였을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祭祀禮服은 <周禮·春官·司說>에 보면, “...王之吉服,...祀五章亦如之 享先王 側袞冕, .....祀四望, 山川側 毳冕, ....祭社稷, 五祀側 毳冕, ....祭群小祀 見冕...”라 되어 있고, <續漢志>에 보면, “...祭服階戴冕...”이라 하여, 祭服은 모두 冕旒冠服이며 祭祀의 성격에 따라서 冕旒數와 紋章을 달리하여 입었음을 알 수가 있다.

三國遺事에, “법흥왕이 ....冕旒冠을 벗어버리고, 方袍를 걸치고...”<sup>53)</sup>라 하였고, 원성왕대 ‘왕이 복두를 벗고 素笠을 쓴 것은, 冕旒冠을 쓸 조짐이라는...’<sup>54)</sup> 꿈의 해석 등으로 미루어 보면, 법흥왕대 이후 신라는 儒敎禮의 儀禮服으로 중국식 冕旒冠服制를 채택하였을 것이고, 왕의 祭祀禮服은 晉·梁의 제도에 입각하여, 중국식 12류 冕旒冠制를 채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法興王, 眞興王의 경우, 개인적인 이유로, 佛敎에 歸依한 이후, 儒敎禮의 統治次元에서 종묘, 사직,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중국식 천자의 12류 면류관복을 착용하고 行禮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일이후, 신문왕은(3년: 686) : 측천무

후 垂拱 2년) 書員을 唐에 보내 길, 흥, 요례 50권을 베껴오게 하였고, 또한 영토 확장에 맞추어 대, 중, 소사의 對象을 개편하면서, “天子는 7墓, 諸侯는 5墓制”의 제후의 禮를 채택, 祭祀儀式과 典禮의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註 39참조). ‘五廟制를 채택’한 것은 신라가 諸侯格으로 국가체제를 설정한 것으로, 왕의 祭祀 禮服은 唐朝 正1-2品 賜與官爵 수준의 禮服인 8류 鷩冕-9류 衮冕 冕旒冠服制를 채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후격의 五廟制를 채택하기는 하였으나 宣德王 이전까지는 천자격의 禮에 준하여 제사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보고서도 있으니, 고려의 공민왕이 元 敗亡後 일시적으로 12류 면류관제를 채택 하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唐이나, 국내의 정치상황, 국왕 재위별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천자격의 12류 冕旒冠服制나 9류 冕旒冠制를 착용하고 行禮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선덕왕이후, 대당 관계의 악화를 무마하기 위하여 제후의 禮로 格을 낮추고, “天子祭 天地, 諸侯祭 社稷”의 개념의 예법을 수용, 社稷壇을 설치하고, 그에 맞추어 기타 天子格의 제사를 수정, 諸侯格의 제사례를 실시하면서 부터 정 1품 品官者服의 9류 冕旒冠 祭服制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또한, 祭祀禮服으로 冕旒冠服을 착용 하였을 것으로 推定하는 논지의 방증자료로, 진덕여왕 3년(649), 신라는 정식으로 중국과 동일한 儒敎禮의 衣冠制度를 채택하여 따랐다.

즉, 삼국유사, 기이, 太宗 春秋公 傳에 “...王代 始服 中國衣冠 牙笏.”<sup>55)</sup>”이라 되어 있고,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 람포 성주사지에, 신라 진성여왕 4년에 세운 것으로 추정하는, 郎惠和尚 백월 寶光國師의 공덕을 기리는 塔碑에 최치원이 교찬한 것을 보면, “...진덕여왕의 命으로 ..소릉황제 (당 태종)면전에서 正朔과 服章을 받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므로, 천자가 이를 기쁘게 허락하고 중국의 의장(華裝)을 賜하고.....”라 되어 있다.<sup>56)</sup> 또, 高麗史 여복지에는 “...新羅 太宗王 請襲 “唐儀” 是後 冠服之制, 中華.....”라 되어 있다. 新唐書 新羅傳에는 “.....春秋 來朝 ...請改 “章服” 從 中國制.....”라 되어

있고, 통전, 변방 新羅傳에는 “大唐 貞觀 22년, 그王.....春秋 來朝 ...請改” 章服 “以從 華制...”라 되어 있다. 兩國의 典據에 보이는, “服章” 혹은 “章服”에 대하여 알아보면, “章”이란, 服裝上 不同文采로 尊卑를 구분하는 것이며<sup>57)</sup> “...특히 貴族의 祭服上의 표시 圖案으로, 日.月.星辰.....등 12 章紋이 있고, “服章”이란, 官吏의 身分 秩序를 紋樣으로 표시해주는 것”이라 하여<sup>58)</sup>, 넓은 의미에서의 “章服”은, 신분의 존귀와 비천, 계층과 계급을 구분 지워 주기 위하여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혹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衣裝 부속품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 할수 있지만, 이는 후세 학자들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최초의 시작은 天子의 12 章紋이 그 시작이며<sup>59)</sup>, 오늘날 우리가 조선조 말 국왕의 9류 冕旒冠服을 “9 章服”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라가 받아들인 唐代的 “章服” 혹은 “服章”에 대해서, 중국의 服飾史學者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孫杞는<sup>60)</sup>, ‘中國古與服論叢’의 下篇, “兩唐書 與服志 校釋考”에서, <도 1>과 같은 당대 돈황 석굴벽화상의 帝王의 章服제도를 제시하고, “면류관, 통천관 服制의 章紋服”을 “唐代的 章服”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석보는 “唐代 ‘章服’은 魚袋制를 말하는 것”<sup>61)</sup>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신, 고춘명은 현종 개원 9년(721), “...백관 紫, 緋者는 필히 佩魚하고 이를 “章服”이라 하였으며, 이때부터 魚袋를 패용하는 것을 “章服”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었다<sup>62)</sup>고 하니, 현종 이전에는 패어하는 제도를 “장복”이라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兩人은 “당대에 이르러서, 관직자들이 품급에 따라서 복색을 달리하여 입는 자. 비. 록. 칭의 품에 따른 복색구분을 “章服”이라고 하였다”<sup>63)</sup>고 하였다.

이상의 고찰결과를 종합하면, “服章” 혹은 “章服”의, “章”이란, 服裝上 不同文采로 尊卑를 구분하는 것이며, “.....특히 貴族의 祭服上의 표시 圖案으로, 日. 月. 星辰....등 12 章紋을 의미”하였는데, 후세에 오면서 “官吏의 身分 秩序를 紋樣으로 표시해주는 것”까지 포괄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唐代的 章服制度”란, “冕旒冠, 章服制”의 制度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宋代에 官職者가 “公服으

로 입는 品色, 단령포, 佩魚, 執笏制”의 制度까지 포괄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唐의 常服(宋의 公服)으로 입는 “品色, 단령포에 執笏, 佩魚袋制”의 制度를 “章服”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현종 開元 9년(721)년 부터 라 하니, 唐書와 通典, 三國史記, 高麗史 등의 典據에 보이는, “眞德女王代 新羅가 채택하였다고 하는, 唐의 “章服制”는, 왕의 祭祀 儀禮服을 중심으로 한 冕旒冠服 祭服制의 章服制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 玄宗 開元 9년 以前까지는 관직자가 착용하는 常服(團領袍, 執笏, 佩魚)을 指稱하여 “章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2) 뿐만 아니라 古新羅는 法興王代 이미, 자. 비. 청. 황 四色の 服色制에, 전통적인 袴褶服 양식의 服制에 笏을 드는 의복령을 반포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진덕여왕 당시 신라의 衣冠制는(고구려, 백제, 위진, 남북조대의 중국과, 隋, 唐으로 이어진, 태종 貞觀 22년(649), 백관은 朔望朝參時 朝服으로 袴褶服을 입도록 하였다) 國際服의 성격의 옷이었고, 冠帽 등에서 差異가 나는 정도로, 唐制와 大同小異 하였다.

(3) 진덕여왕대 신라가 唐의 章服制를 請襲한 것은, 신라 백관이 이미 입고 있었던, 중국식 자. 비. 록. 靑 四色 服色制에 執笏하는, 唐의 袴褶服 朝服制나, 관직자가 착용하는 常服(團領袍, 執笏, 佩魚)의 衣冠制(唐의 관직자 常服으로 定한 團領袍는, 唐의 太宗年間(627-649)에 진손무기의 奏請에 의하여 上衣에 襪을 加하여 ‘袍’라고 한 것이 시작으로, 태종대 당시에는 ‘常服’으로 불렀다)라 하기보다는, 왕의 冕旒冠의 祭禮服을 포함한, 儀式全般의 律令制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신라가 진덕여왕대 채택한, 당 무덕령의 “章服制”, “唐儀”, “華制”, “服章制”, “牙笏制” 등, 양국의 典據에 보이는 제도는, 唐의 제왕 및 군신의 冕旒冠 祭祀 예복제를 비롯한 儀制 전반을 말하고, 이로 인해서 왕은 祭祀禮服으로 官爵의 品級에 해당하는 9旒 冕旒冠服을 입고 行禮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신라가 唐의 武德令에 의한 唐書 車服志 상의 冕旒冠制 儀禮服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여 주는 자료로서, 唐의 玄宗은 景德王 2년(743), 사신을 보내 왕을 책봉하면서, “.....중국의 衣冠은 벌써 이어 받았고.....”<sup>64)</sup>라 하였는데, 이때는 남국신라가 唐의 의복을 채용한지 100여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였으므로, 兩國은 儀禮服 측면에서 이미 異質感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大同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이를 새삼 언급함은(一國의 正朔이나 服制와 儀禮制가 어느나라와 같음은, 臣屬을 의미하고, 蕃國으로서의 忠誠과 朝貢의 의무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儀禮服이 이미 同質의 人 次元이며 이미 自體製作으로도 충당하고 있었을 터이니, 衣冠(賜與 官爵에 해당하는 冕旒冠服에 준한)을 通常慣例대로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意圖가 內包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신라의 문성왕이 즉위년(839), 청해진 대사<sup>65)</sup> 장보고에게 “鎮海將軍의 벼슬과 ‘章服’을 내려주었다”<sup>66)</sup>고 하는 記錄이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章服”도, “면류관, 章服制”의 진해장군이라는 武官品 관직에 해당하는 服制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상과 같은 論之를 뒷받침 해 줄수 있는 資料로서, 唐은, 태종 貞觀 9년(635), 고 신라 선덕왕 仁平 4년 부터, 唐 희종(878,) 신라 헌강왕 4년까지 243년 동안 왕이 바뀔 때마다 官爵을 주고 冊封하면서 冊封禮物로 衣服과 衣服材料를 賜與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일본의 服飾史學者 衫本 正年은 “신라에 賜與된 賜服의 내용은 祭服 및 그를 제작할 수 있는 옷감이 주된 것이었다”는 견해를 보이고, 또 “衣服一部”, 혹은 “衣服一襲” 등 이라고 하는것도 儀式用的 祭服이었다<sup>67)</sup>는 견해를 제시하여 연구자의 유추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신라왕에게 唐朝 賜與, 혹은 新羅自體 製作 冕旒冠服制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그 제도를 唐書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唐은 618년 건국하고, 3년후 武德 4년(621), 최초의 의복령을 발표 하였다. 舊唐書에는 皇帝服이 12복, 新唐書에는 14복으로 되어있다. 君臣服은 袞冕이하 21복이 있었는데 그중 祭服은 9복이다. 眞德女王 元年, 唐으로 부터 賜

與받은 '柱國, 樂浪郡王'의 官爵<sup>68)</sup>에 상당하는 諸侯 格禮 성격의 禮服은 唐書 與服志, 武德令에 의하여 보면, 唐의 君臣 祭服 9種중, 唐의 正 1품-2品 祭祀 儀禮에 해당하는 8류 驚冕, 9류 衰冕 冕旒冠服制이

며, 이를 정리하면<表 10>과 같다.

이상과 같은 唐書 여복지 상의 8-9류 驚, 衰冕制를 唐代的 壁畫와 後代인, 宋代 攝崇義의 三禮圖를 통해서 보면 <도 1, 2>와 같다.

<표 10> 당의 1품과 2품 관직자 제사 의례복표.(典據: 新·舊唐書)

품급	1품	2품
복명	곤면	별면
면류수	9류	8류
관식	청기.조영	좌동
이식	청광 충이	"
감도	角質 宝飾	"
上衣 色	청색	"
裳色	혼색	"
章紋數	9장(衣: 용, 산, 화충, 화, 종이) (裳: 조, 분미, 보, 불)	7장(衣: 화충, 화, 종이) (裳: 조, 분미, 보, 불)
중단의 색과 재료	백사	좌동
중단의 領飾紋	불문	"
표.선.거	청색	"
말색	주색	"
석	적색	"
혁대 장식	구침	좌동
대대	裳色인 혼색과 등	"
劔장식	금보옥장식	금식
패옥	산현옥(현색옥)	수창옥(청색옥)
패수	록려(쑥색)색(자, 황, 적)	자색(황, 적)
綬의 길이	1장 8척	1장 6척
綬의 폭	9치	8치
綬 首	240수	180수
기타		금루 반량



<도 1> 冕旒冠 章服과 紋章服.

1. 당대 돈황석굴 소재 壁畫, 禮佛 帝王의 紋章服 착용도 孫機, 1993, 앞책, 주봉, 1988, 앞책, 103.
2. 돈황 壁畫 소재 五代 絹畫, 冕旒冠 章服 착용 五方 五帝圖. 加藤勝久, 서역의 미술, 권3. 감담사, 소화 59.



<도 2> 8旒 鷩冕, 9旒 衮冕 冕旒冠 章服.

- |                           |                           |
|---------------------------|---------------------------|
| 1. 天子의 衮冕服, 고금도서 집성. 관복부. | 2. 上公의 衮冕服, 고금도서 집성. 관복부. |
| 3. 上公의 衮冕服, 십승의 삼례도.      | 4. 上公의 衮冕服, 고금도서 집성. 관복부. |
| 5. 侯伯의 鷩冕服. 십승의 삼례도.      | 6. 侯伯의 鷩冕服. 고금도서 집성. 관복부. |

### V. 결 론

1) 고신라는 법흥왕대, 백제 사신을 따라서 처음으로 梁에 사신을 보냈고, 왕은 율령을 반포하여 공복색을 제정하고, 23년(534),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

天子國과 對等한 格으로 주변국들과 외교관계를 갖었으며, 진덕여왕 4년에 唐의 年호를 채택하여 사용하기 前까지, 연호 제정이후 116년간 신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2) 唐의 태조가 진평왕 46년, 官爵 賜與를 시작으로, 헌강왕 4년까지 300여년 동안 왕이 바뀔 때마다 唐의 正 1품-3품의 冊封官爵과 官爵에 상응하는 禮服과 禮物를 賜與 하였다.

3) 양국사신 來往은 진평왕 45년, 唐의 건국과 함께 시작되어, 진성왕 5년(당 폐망 12년전, 남국신라의 후삼국 분열)까지, 교류 268년 기간 동안, 년 1-4 회, 1-4년 간격으로, 170여회 사신의 내왕이 있었다.

4) 古 新羅는 始祖廟의 宗廟와 3山, 5岳 이하 명산대천을 大祀, 中祀, 小祀로 나누어서 祭祀 하였다. 남국신라 初期, 唐의 년호, 唐의 율령제 채택과 더불어, 天地神과 宗廟에 드리던 天子格의 祭祀禮는 신문왕대, 諸侯格의 五廟制로 바뀌고, 대, 중, 소사의 대상과 전례의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五廟制 채택'은, 唐에 대하여, 諸侯格으로 國家體制나 祭祀禮를 설정한 것이지만, 宣德王 以前까지는 天子格의 祭祀禮를 실시하였으며, 宣德王 이후 '諸侯의 禮에 상응하는 祭祀儀式'으로 변경하였다.

5) 지증왕대, 국호를 '新羅'로 바꾸고, 尊號를 중국 正 1品 宗室官爵의 '王'으로 바꾸면서, 고대 국가시절의 祭祀禮와 祭祀服이었던, '金冠'과 그에 따른 祭祀服의 사용을 중지하였다. 법흥왕대, 율령을 반포, 天子國과 대등한 통치기틀을 세우고, 祭祀禮服은 晉, 梁의 제도에 立脚하여, 왕은 중국식 冕旒冠制, 백관은 국속의 袴褶服制를 制定 하였다. 진덕여왕 3년 이후, 唐의 衣冠制度를 踏襲하면서, 왕의 冕旒冠 祭祀 禮服制를 비롯 백관의 常服(단령포, 집홀, 패어)제를 포함한 儀禮制 전반을 수용하였다.

통일후, 신문왕 3년, 왕은 영토 확장에 맞추어 대, 중, 소사의 대상을 개편하면서, "天子는 7墓, 諸侯는 5墓制"의 諸侯格의 五廟制를 수용, 祭祀儀式과 典禮의 制度 개편을 단행하였다. '五廟制 채택'은 諸侯格으로 國家體制를 整備한 것이며, 以後 唐朝 賜與 왕의 官爵은, 唐의 正 1-2品職으로, 正 1-2품 官職者가 祭祀禮에서 착용할 수 있는 禮服은, 唐書 車服志에서 보면, 鷩冕(8류)-衮冕(9류) 冕旒冠 服制로

신라왕은 祭祀에서 9류 衮冕 冕旒冠服制를 착용하고 行禮하였다.

## 참고문헌 및 미주

### 국내서

- 김부식, 삼국사기, 김종권역, 진명출판사, 1960.
- 김병모, 금관의 비밀, 서울, 푸른역사, 1998.
- 권오돈, 예기, 흥신문화사, 1993.
-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소, 역주, 고려사, 1982.
- 이현종 편저, 동양년표, 탐구당, 1971.
-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 (1), 1996, 경춘사, 149, 171.
- 역민사, 세계사 연표, 1984.
- 조선 금석문 총람, 상, 1974, 서울 경인 문화사, 81, d
-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사기, 2, 번역편.
-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상, 하).

### 국내 논문

- 나희라, 신라초기의 왕의 성격과 제사, 한국사론, 23, 1990.
- 변대섭, 묘제의 변천을 통해서 본 신라사회의 발전과정, 역사교육, 18, 1964.
- 신종원, 삼국사기, 제사지 연구,
- 서영대, 삼국사기와 원시종교, 역사학보, 105, 1985.
- 전봉덕, 신라 율령고, 한국법제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8.

### 중국서

- 고금도서집성.
- 경인문화사, 신당서, 서울, 경인문화사, 1979.
- 경인문화사, 구당서, 서울, 경인문화사, 1979.
- 경인문화사, 晉書, 서울, 경인문화사, 1979.
- 상해 고적 출판사, 역대 직관표, 上, 下.
- 섭송의 삼례도.
- 孫機, 中國古輿服論叢, 下篇, 兩唐書 輿服志 校釋考, 1993, 文物출판사.
- 王溥 選, 唐會要, 대북, 상무 인서관, 1968.
- 자치통감.
- 주신, 고춘명, 중국 의관 복식 대사전, 상해문물 출판사, 1996.
- 주석보, 중국고대 복식연구, 북경, 중국회극출판사, 1984.
- 鄭玄 註, 周禮, 대북, 중화서국, 1966.
- 주봉, 중국고대 복장 참고자료, 수당, 오대 부분, 북경 연산출판사, 1988.

### 일본서

- 加藤勝久, 서역의 미술, 권3, 강담사, 소화 59.



· 杉本正年, 문광회역, 동양북장사 논고, 중세편, 경춘사, 1997.

- 1) '斯盧'는 중국측 삼국지 권30 위서 동리전에 진한 12국 중 하나로 기록된 것이 처음으로 城邑國家 시절의 國號로 보고 있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주석편 상 99.
- 2) '사라'라는 국명은 중국의 魏書 권8 세종 경명 3년(508) 조, 같은 책 영평 원년(508)년 조와 '양직공도'에서 볼 수 있다.
- 3)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주석편 상 99.
- 4) 그 이전까지는 알타이계 유목민 首長의 칭호라고 볼수 있는, 칸, 한, 마립간의 칭호를 쓰고 있었다.
- 5)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 (1), 1996, 경춘사, 149, 171.
- 6) 삼국사기, 권제 6, 문무왕조.
- 7) 법흥왕 7년 반포된 율령은 중국 쑤나라 秦始律을 母法으로 한 고구려의 율령을 이어받은 것으로 백관의 공복제, 17관등, 골품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사기 권 제4, 주석편(상), 104.
- 8) 古 新羅의 현재 傳世遺物(5-6세기경 출토유물)중 金製 鈔帶로 천마총, 금관총, 황남대총 북분 등에서 8. 13. 17 鎧의 金製 鈔帶 등이 출토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 권1, 紀異 1, 天賜玉帶조에 보면, 眞平大王, 金氏, 大建十一年乙亥八月即位...라 되어 있고, 即位元年, 有天使降餘殿庭, .....上皇命我傳賜玉帶....王親奉受, 然後基使上天, 凡 郊廟大祀階服之'라 되어 있고, 또 '天賜玉帶.....金批柱方腰帶一條, 長十圍, 鑲鈔六十二, .....是眞平大王 天賜帶也, 太祖受之, 藏之內庫'라 되어 있다. 또, 後, 高麗王, "...新羅有三寶不可犯, 何謂也?.....二, 眞平王天賜玉帶..."라 되어 있어, 이를 보면 진평왕은 即位年에 하늘(중국측으로 부터 賜與 禮物일 가능성이 큼)의 天使로 부터 길이가 10圍, 鑲鈔 62개나 되는 玉帶를 받아서, 郊廟에서 祭祀시 祭祀禮服에 착용하였으며, 이를 신라의 '3 寶'로 간직 해오다가, 高麗에 나라가 병합되면서, 高麗太祖의 下問에 의하여 태조에게 獻上하게 되었고, 太祖는 이를 引受하여 庫에 保管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로 보면, 전세실물로 천마, 금관, 황남대총 등 출토, 8. 13. 17과의 金帶 외에, 문헌기록상으로 밝혀진 진평왕의 玉帶와 앞서본 金帶의 존재로 보아서, 古新羅에서는 국왕이 祭祀禮服에 옥대나 13과 금대를 착용하였음을 알게 해주는데, 중국측 자료에 보면, 資治統監, 陳宣帝 太建 12年조에 "...13鎧 金帶者, 天子之服也..."라 되었고, "天子以十三鎧金帶爲...後周制也."(주신, 고춘명, 1996, 앞책, 444)라 되어 있으며, 北史, 李穆傳에 "...遣使謁隋文帝, ....13鎧 金帶...天子服也..."라 되어 있고, 또 隋書 禮儀志 7에 보면, 高祖朝服亦如之, 唯帶加十三鎧....."이라 되어 있고, 또 唐會要, 卷 31, 에 보면, "上元 元年....四品服 深緋, 金帶十一鈔,

五品服 淺緋, 金帶十鈔,....."라 되어 있는데, 또, 唐書 服志에 唐 高宗 656년, "... 三品以上 服紫, 金玉帶鈔 十三..."로 정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이로 보면 신라왕이 착용하였던 13환 金製鈔帶는 後周나 陳 등, 南北朝이후 隋의 高祖나 唐의 服制上, 中國天子가 착용하는 제도이며, 같은 시기에 진평왕이후 신라왕들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中國 賜與 儀物이거나, 自體 製作한것이거나 간에, 진덕왕 以前까지의 新羅는 天子國과 對等한 格으로 周邊國과 外交關係를 갖었으며, 祭祀禮服을 착용하고 行禮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다.

- 9) 당의 정 2품 훈작직.
- 10) 한의 무제가 설치하였던 낙랑군의 책임통치자라는 의미의 관직.
- 11) 開府 - 開建府署의 뜻으로, 外方의 군사 실력자들을 지칭하였다.
- 12) 僕同三司-三司(三公)과 동등한 지위의 大將軍(문관은 광록대부(:당나라 정 3품 문산계) 이상)들에게 수여한 작위인데, 수·당대에는 실직없는 명칭만 남았다. 개부 의동삼사 - 당나라 중 1品 문산계. 신라에서는 진덕왕이 처음으로 이 벼슬을 받았다. 무열, 문부, 김인문, 성덕왕 등이 이 직함을 당으로 부터 받았다.
- 13) 계림주는 신라를 의미한다. 都督은 주의 장관, 행정권과 군사권을 관장하였는데, 당이 신라를 하나의 州로 간주하고, 왕을 주의 행정관으로 임명하였던 의미가 있다. 도독은 군무를 총괄하는 병관으로 중 1품직이다. 역대 직관표, 1079.
- 14) 당의 정 2품 무산 관직이다.
- 15) 표도위는 왕과 궁궐을 호위하던 금위군의 하나로 좌우 표도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정3품의 대장군 1명이 부대를 관장하였다.
- 16) 당의 정 2품 무산계 관직이다. 신당서 백관지.
- 17) 태사, 태부, 태보의 3사제는 3공과 같은 관직으로 당대 정1품 관직이다.
- 18) 군사권을 맡기는 신하에게 주는 信標의 일종이다.
- 19) 군부를 총괄하는 병관으로 제독, 제군사직은 중 1품직이다.
- 20) 상서는 내각의 직관명이다.
- 21) 검교는 散職이고 태위는 정 1품직이다.
- 22) 唐書 車服志, 권 17, 志第 7 이하, 嘉禮 4, 부터 황제가 하 冠, 婚(納后), 册封 등의 儀禮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중국측의 周, 漢, 晉, 隋, 唐이래 儒敎禮에 입각한 統治秩序 次元의 規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사 여복지 권 65, 지 19, 예7 이하 소재, 册封禮式이 중국의 수, 당제의 의례규범과 대개 같고, 조선왕조대 '國朝五禮儀'의 根幹이 된 '周禮' '禮記', 중국왕조별 '輿服志'등의 儀禮書의 규범이 國朝五禮儀의 册封禮規範과 大同小異함을 보아서 이를 유추할 수가 있다.  
: 법흥왕 7년 반포된 율령은 중국 쑤나라 秦始律을

母法으로 한 고구려의 율령을 이어받은 것으로, 晉書 여복지를 보면, 주례, 예기, 漢代, 三國時代 여복지, 소재 律令을 기초로 제정된 여러 가지 의례 규범을 볼수가 있고 고구려나 신라는 이를 토대로 自國의 율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注7) 참조, 삼국사기 권 제4, 주석편(상), 104.

: 당 태종이 진덕왕 원년(647), 김춘추에게 '晉書(中國正史 25사중 하나)를 내렸고 이를 토대로 신라는 禮服制를 唐制를 따랐으며, 649년 中國衣冠을 입기 시작하고, 중국의 '永徽' 年號를 쓰고, 651년 처음으로 왕이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임명미, 1996, 앞책, 514-515). : 신라 신문왕 3년, 축천무후가 수공(685-688) 2년, 신라에 '吉凶 要禮'를 보냈다.(임명미, 1996, 앞책, 518-519).고 하는 것은 신라의 제반 의례가 유교례적 통치질서에 의하여 실시되었을 것임을 추정하게 해 주는 사례의 증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다.

- 23) 삼산-나력(奈歷), 골화(骨火), 혈례(血禮)의 3산은 신라영토내에서 가장 높은 위계를 차지하였던 대사의 대상이었다. 잡지, 제1, 주석편(하), 17.
- 24) 오악-중사의 대상이었던 오악으로 동쪽의 토함산, 남쪽의 지리산, 서쪽의 계룡산, 북쪽의 태백산, 중앙의 부악산, 등의 오악이다. 오악은 원래 중국에서 나라의 '鎮'으로 숭상하던 5방위의 명산으로 천자가 이를 제사지내기 위하여 이곳들에 순행 하였다. 고신라시대에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평야의 주변에 토함산, 남산, 선도산, 금강령, 中岳의 오악 개념이 있었던 듯 하고, 삼국사기 제사지에 나오는 신라의 오악이 성립된 것은 통일후 고구려 백제의 故土를 포괄하게 되자 문무왕 말이나 신문왕대에 확장된 영토의 대표적 산악을 5악으로 다시 제정하여 국가적 제사의 中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잡지, 제1, 주석편(하), 17. 五岳에는 각각 山神이 있고, 이 산신들을 造像하여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이기백, 신라 정치사회의 연구, 일조각, 1974, 194-215.
- 25) 제 22대 지증왕대, 유교례적으로 名山大川과 진, 해, 독의 諸神들에게 대, 중, 소사의 등급을 부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고, .....지증왕 3년에 神宮에 국왕이 親祀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注 34 참조) (注 47 참조). : 25대 진흥왕의 순수비에 보면, "地祇", 즉 천자의 제사대상에 해당하는 "地神"을 제사지내(注 36참조), "天地에 제사"한 것으로 고찰되어(注 37 참조), 천자 격의 儒敎禮에 준한 제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으며(注 38 참조), : 신문왕대 禮記의 王制편에 있는, "天子는 7墓(注 39 참조) 諸侯는 5墓制" (注 40 참조)의 제후의 禮에 입각한, 五廟制를 채용, 古新羅代 신라 大, 中, 小祀의 대상을 개편하는 전례의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注

42 참조) 그러나 종묘제는 신문왕 이전에 이미 기존의 시조묘나 신궁과는 다른 형태의 종묘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으며(注 43 참조), 실제로 문무왕은 5년(665), "백제와 熊嶺에서 단을 쌓고 맹약을 한 뒤, 金泥를 입힌 증표를 '宗廟'에 간직하였다"고 하였으니..(注 44 참조), 신문왕 이전의 종묘존재가 확인된 셈이다.

: 선덕왕 이전까지는 天子格의 祭祀禮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注 45 참조), 선덕왕대에 와서 '제후의 禮에 상당하는 제사의식과 전례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注 46 참조) 제후의 禮로 格을 낮추고, 禮記 王制편에 있는 "天子祭 天地, 諸侯祭 社稷" 개념의 예법을 수용, 선덕왕 4년, 社稷壇(注 47 참조)을 설치하였고, 그에 맞추어 기타 天子格의 제사를 수정하여 제후격의 제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즉, 天地의 神에게는 天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제후이하는 그에 대한 제사를 거행할 수 없도록 된 규정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注 48참조) 선덕왕이 후 五廟制, 社稷壇 설치, 先農 등의 제후격 제사례에 의하여 제사 지낸것으로 보고 있다(注 49 참조).

: 김춘추는 이찬시대에 遣唐使로 唐에 들어가서, 당의 初期, 무덕 7년령, 태종의 정관정요와 율령격식(당의 율령은, 무덕 7년, 정관 11년의 정관 율령격식, 영회 2년, 수공 원년의 율령, 신룡 元年의 율령, 개원 7년의 율령, 개원 25년의 율령으로, 당의 개원율령이 완성된 시기는 개원 20년(732)년이다), 盛唐의 문물 제도를 직접 見聞 하였고, 정관 10년(태종 정관 10년, 율령 격식 공포), 태종 어찬의 '晉書' 등을 받아왔다. 법흥왕 이후, 태종 무열, 문무왕대(문무왕대 신라의 율령 격식 완성), 717년, 養老율령을 제정하였고, 경덕왕대, 혜공왕대, 애장왕대(애장왕 6년, '영포 공식 20여조'는, 당령의 공식령에 해당하는 신라 공식령의 영포를 의미한다), 율령 격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식이 있었으며, 신라의 律令은 경덕왕대 頂點으로 완성되어, 그후 흥덕왕대 까지 약 100년간이 율령정치 의 전성시대였다. 회강왕대 이후 내, 외환으로 율령정치 체계가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注 51 참조)

- 26) 구당서, 권 21, 예의지.
- 27) 사진-동-온말근, 남-해치야리, 서-가야잡악, 북-용골악 등이다.
- 28) 사해-신라에서 중사의 대상이었던, 큰 4개의 하천으로 동-아등변, 남-형변, 서-미릉변, 북-비례산.
- 29) 사독-신라에서 중사의 대상이었던, 큰 4개의 하천으로 동-토지하, 남-황산하, 서-용천하, 북-한산하.
- 30) 속리악-속리산.
- 31)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 주석편(하), 18.
- 32)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 주석편(하), 29.
- 33) 나회라, 신라초기의 왕의 성격과 제사, 한국사론, 23.

- 1990, 80-89.
- 34) 神宮은 시조가 탄생한 곳에 세워 제사 지내던 건물, 소지왕 9년 처음으로 설치하고, 17년 왕이 친사한후, 역대 왕들은 대개 즉위 이듬해 정월 또는 2월에 즉위 의례로서 친사하였다. 그러나 진흥, 무열, 문무, 효성 왕 등은 친사하지 않았다. 하대에 이르면서 신궁 親祀의 禮는 줄어들었지만, 55대 경애왕대까지는 제도의 실시가 이어졌다.
  - 35) 변대섭, 묘제의 변천을 통해서본 신라사회의 발전과정, 역사교육, 18, 1964.
  - 36)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 "冥感 神祇".
  - 37) 삼국사기 권제 32 주석편(하), 10.
  - 38) 삼국사기절요, 권12. : 삼국사기 권 제32, 주석편(하)10. : 신종원, 삼국사기, 제사지 연구, 37-45.
  - 39) 7묘는 태조와 3昭, 3穆의 7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중국의 위진이후로 천자의 7묘제가 정착되었다. 태조묘는 북방에서 남향하고, 그의 2, 4, 6세의 3소는 왼쪽에, 3, 5, 7세는 오른쪽에 배열하고 태조묘와 고조의 부조의 2조(祧)는 不遷墓로 하였다.
  - 40) 5묘는 유교례에서 제후의 종묘를 가리키는데 소와 목에 각각 둘씩 배치하는 4親 墓制이다. 중앙의 태조묘, 왼쪽에 고조와 租의 墓가 왼쪽의 昭의 옆에 배치되고, 오른쪽의 목의 옆에는 曾祖와 父의 묘가 배치된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후 당나라의 영향으로 이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라에서는 1년에 6회 제사하였다.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 주석편(하),6.
  - 41) 五廟制는 31대 신문왕 7년(687), 왕이 조묘에 대신을 보내 태조, 진지, 문흥, 태종, 문무왕에게 치제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 이미 오묘제가 시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 주석편(하), 7.  
 혜공왕은 미추왕을 畵姓의 始祖로 공인한 것으로, 혜공왕대 5묘는 五廟이면서, 태종과 문무의 2묘를 불천묘로 추가 지정하므로서, 7묘와 5묘의 중간형태를 띄게 되었다. 애장왕은 태종, 문무 양 대왕의 2墓를 별도로 세움으로서, 5묘제에서 제외시키고, 始祖와 왕의 直祖 4親으로 원래의 五廟로 복귀하였다.
  - 42)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 주석편(하), 10.  
 1. 신라의 제사령을 보면, 1. 1년에 6회 오묘에 제사하는데, 1월 2일, 5일, 5월 5일, 7월 상순, 8월 1일, 15일, 12월寅일.  
 2. 신성 북문 제 8자. 풍년 용대뢰, 흉년용 소뢰  
 3. 입춘후 亥일, 명활성남 응살곡제 선농, 입하후 해일, 신성 북문 제 중농, 입추후 해일 〇원 제후농.  
 4. 입추후 축일 견수곡문 제풍백, 입하후 신일 탁도 제우제, 입추후 진일 본 피유춘 제영성. 290.
  - 43)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 주석편(하),7.
  - 44) 삼국사기, 권 제6, 문무왕 상, 128.
  - 45)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 주석편(하), 10.
  - 46) 신종원, 삼국사기, 제사지 연구, 28-29.
  - 47) 儒敎禮에서는 왕이 나라를 세우고 궁실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묘와 사직을 세워서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며, 천지신명에게 백성들의 생업인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사상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다. 왕이 도읍을 정하면, 궁성의 왼편에는 종묘, 오른편에는 사직을 세웠다. 토지의 神, 곡물의 神에게 제사 지내는 곳을 설치하였고, 그에 맞추어 기타 天子格의 제사를 수정하여 제후격의 제사를 실시하게된 것으로, 즉, 천지의 신에게는 천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제후 이하는 그에 대한 제사를 거행할수 없도록된 규정을 스스로 택하여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48) 신종원, 삼국사기, 제사지 연구, 37-45.
  - 49) 변대섭, 묘제의 변천을 통해서본 신라사회의 발전과정, 역사교육, 18, 1964.
  - 50) 김병모, 금관의 비밀, 서울, 푸른역사, 170.
  - 51) '승'은 '律'과 같이 국가의 근본법을 구성한다. '律'은 형벌법규이고, '승'은 비형벌 법규이다. 국가 조직 운영의 중요한 것을 규정한 것이다. 신라의 율령은 법흥왕 7년, 반포하였는데, 법흥왕 7년의 신라 율령은 신라 최초의 성문법으로, 고구려의 율령이 영포된 소수림왕 3년(373)보다 150년 가까이 뒤떨어진 것이다. 신라는 불교를 고구려로부터 導入한 것과 같이 율령 정치도 고구려로부터 받아 드린 것이며, 법흥왕대는 중국 梁의 武帝시대에 해당하고, 고구려는 광개토왕, 장수왕의 뒤를 이은 문자왕 시대에 속한다. 신라가 梁에 사신을 보낸 것은 율령을 발표한 일년뒤 법흥왕 8년이 처음이며, 7세기 중엽 김춘추는 이찬시대에 遣唐使로 唐에 들어가서 盛唐의 문물제도를 견문하였고, 정관 10년 태종 어찬의 質書 등을 받아왔고, (신당서 동리전 신라조).. 태종 정관 10년, 태종은 율령 격식을 공포하였는데, 김춘추는 당의 율령정치를 직접 견문하고 돌아와 태종의 정관 정요와 율령 격식을 직접 본받아 온후에는 고구려식 율령을 떠나서 당 체제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당의 율령이 무덕 7년, 정관 11년, 정관 율령격식, 영휘 2년, 수공 원년의 율령, 신통 元年의 율령, 개원 7년, 개원 25년의 율령, 당의 개원율령이 완성된 시기는 개원 20년(732)년 이다). 신라는 법흥왕 이후, 태종 무열왕대, 문무왕대에 신라의 율령 격식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717년, 養老 율령을 제정하였고, 경덕왕대, 혜공왕대, 애장왕대(애장왕 6년, '영포 공식 20여조'라 하여 당령의 공식령에 해당하는 신라 공식령의 영포) 율령 격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改式이 있었고, 신라의 律令은 경덕왕대 정점으로 완성되어 그후 흥덕왕 까지 약 100년간을 율령정치의 전성시대로 보고, 그 이후 회강왕대 이후

- 내, 외환으로 율령정치 체계가 붕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 52) 삼국사기, 권제 5, 진덕왕 102.
- 53) 삼국유사, 권제 3, 법흥왕조.
- 54) 삼국유사, 권제 3, 원성왕조.
- 55) 춘추왕대 신라가 받아들인 禮制에서 '아홀'은 '상아홀'을 의미하는 것으로, 唐書에 보면, 아홀은 5품이상의 관직자가 祭禮服에 든다. 모양은 '위'는 둥글고 아래가 方形인 것'과 '위가 깎이고 아래가 方形인 것' 2종류가 있었으며, 전자는 '5품 이상자'용 이었고, 후자는 '6품 이하의 관직자용'이었으며, 재료는 '竹'과 '木'으로 하였다.
- 56) 조선 금석문 총람, 상, 1974, 서울 경인 문화사, 81.
- 57) 주신, 고춘명, 중국의관 복식 대사전, 상해문물 출판사, 1996, 5
- 58) 바로앞책 동면.
- 59) "章服"에 대하여, 주신,고춘명은 服裝上의 준귀와 비천을 구별짓기 위한 서로 다른 재료, 색, 문양 등을 가리키는데, 夏代부터, '夏書'를 인용하여, 천자 제복상의 일. 월. 성신 등...祭服상의 12장문이 "章服"의 시작이다. 고 하고, 병졸들의 대오나 행렬 등을 구분짓기 위한 5색 깃발이나 표시로 쓰이는 것도 "장복"이라고 하였다. 후한대에는 후한서 여복지 상에 보이는 각각의 方位상의 색 역시 "章服"이라고 하였다. 송대에는 宋史 여복지 상의 '패어'제도를 "장복"이라고 하고, 清代에는 補服의 前後 가슴에 문관은 '새'종류, 무관은 '짐승' 종류의 문양을 부착한 것을 "장복"의 예로 들고 있다. 바로앞책, 동면.
- 60) 孫杞, '中國古與服論叢'의 下篇, "兩唐書 與服志 校釋考" 1993, 문물출판사, 281.
- 61) 주석보, 중국복식사연구, 1984, 188.
- 62) 唐書, 車服志, ...致仕佩魚終身 自是百官賞 緋, 紫 必兼魚袋 謂之 章服...주신, 고춘명, 중국의관 복식 대사전, 상해문물 출판사 1996, 앞책, 468.
- 63) 바로앞책, 5.
- 64) 삼국사기, 권, 제9, 경덕왕, 192.
- 65) 節度使는 지방관직의 하나로 군사를 총괄하였다. 大使는 절도사와 같은 관직이다. 삼국사기, 권, 제40, 주석편, 하, 605.
- 66) 삼국사기, 권, 제11, 문성왕, 232.
- 67) 杉本正年, 문광회역, 동양복장사 논고, 중세편, 경춘사, 1997, 344.
- 68) 삼국사기, 권, 제5, 진덕왕, 102.